

# 제안서평가 기준

## 1

### 구 성

- 제안평가기준은 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”에 의하여 구성
- 기술능력평가 비중 100분의 80, 입찰가격(수수료율)평가 비중100분의 20
  - 기술능력평가 : 정량적평가 20점, 정성적평가 60점(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)
  - 입찰가격(수수료율)평가 20점

## 2

###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

#### 1] 정량적 지표 내역

구 분	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요소(기준)	점수	배점	
회수실적 및 회수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최근 3개년간 신용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중앙회,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)</li> </ul>	회수실적	5	5
		회수율	5	5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최근 3개년간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(공공기관 : 신용보증기관을 제외한 주택금융공사, KAMCO(희망모아채권포함), 중소기업진흥공단, 무역보험공사, 서울보증보험 등)</li> </ul>	회수실적	5	5
		회수율	5	5
합 계		20	20	

□ 신용보증기관 회수실적 및 회수율(10점)

- 평가대상 : 입찰 참가회사의 최근 3년 이내 신용보증기관에서 위임된 채권의 회수실적 및 회수율(위임 개월수 대비 월평균 회수율로 계산)
- 평가기준 : 참가회사 회수실적 및 월평균 회수율이 최고인 곳을 100% (기준점수 각5점)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례율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 산정
  - ◆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: 지역신용보증재단(중앙회 포함)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
  - ◆ 기준점수 : 각 5점(100%) 대비 입찰회사 각각의 회수실적 및 월평균 회수율

구 분	100%	80%이상 100%미만	60%이상 80%미만	40%이상 60%미만	40%미만	미제출
평가점수 (5점)	5점	4점	3점	2점	1점	0

※ 기준점수를 입찰참가자 중 최고 회수실적 및 최고 월평균 회수율을 제출한 입찰자의 점수로 하고, 평가대상 입찰참가자는 최고 회수실적 및 최고 월평균 회수율 대비 산출식에 따라 환산하여 평가

● 회수실적 비례율 산출식

$$\text{비례율} = \left( \frac{\text{평가대상 입찰참가자 회수금액}}{\text{입찰참가자 중 최고 회수금액}} \right) \times 100\%$$

※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(이하 절사)이며 산식값은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

● 월평균 회수율 비례율 산출식

$$\text{비례율} = \left( \frac{\text{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월평균 회수율}}{\text{입찰참가자 중 최고 월평균 회수율}} \right) \times 100\%$$

※ 산식값은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

예시) A사 : 회수율(2013년 0.5%, 2014년 0.45%, 2015년 없음)

$$\rightarrow (0.5\% + 0.45\%) / 24 = 0.0396\%$$

B사 : 회수율(2013년 0.45%, 2014년 0.4%, 2015년 11월 0.5%)

$$\rightarrow (0.45\% + 0.4\% + 0.5\%) / 35 = 0.0386\%$$

C사 : 갑 기관 회수율(2013년 0.3%, 2014년 0.4%)

을 기관 회수율(2014년 0.45%, 2015년 11월 0.5%)

$$\rightarrow \text{갑 기관 월평균 회수율} (0.3\% + 0.4\%) / 24 = 0.0292\%$$

$$\text{을 기관 월평균 회수율} (0.45\% + 0.5\%) / 23 = 0.0217\%$$

$$\rightarrow \text{C사 월평균 회수율} : (0.0292\% + 0.0217\%) / 2 = 0.0255\%$$

□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회수실적 및 회수율(10점)

- 평가대상 : 입찰 참가회사의 최근 3년 이내 신용보증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위임된 채권의 회수실적 및 회수율 (위임 개월수 대비 월평균 회수율로 계산)
  - ◆ 공공기관 : 신용보증기관을 제외한 주택금융공사, KAMCO(희망모아채권포함), 중소기업진흥공단, 무역보험공사, 서울보증보험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관.
  - ◆ 금융기관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4호의 금융회사 등
- 평가기준 : 참가회사 회수실적 및 월평균 회수율이 최고인 곳을 100% (기준점수 각5점)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례율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 산정
  - ◆ 기준점수 : 각 5점(100%) 대비 입찰회사 각각의 회수실적 및 월평균 회수율

구 분	100%	80%이상 100%미만	60%이상 80%미만	40%이상 60%미만	40%미만	미제출
평가점수 (5점)	5점	4점	3점	2점	1점	0

※ 기준점수를 입찰참가자 중 최고 회수실적 및 최고 월평균 회수율을 제출한 입찰자의 점수로 하고, 평가대상 입찰참가자는 최고 회수실적 및 최고 월평균 회수율 대비 산출식에 따라 환산하여 평가

● 회수실적 비례율 산출식

$$\text{비례율} = \left( \frac{\text{평가대상 입찰참가자 회수금액}}{\text{입찰참가자 중 최고 회수금액}} \right) \times 100\%$$

※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(이하 절사)이며 산식값은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

● 월평균 회수율 비례율 산출식

$$\text{비례율} = \left( \frac{\text{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월평균 회수율}}{\text{입찰참가자 중 최고 월평균 회수율}} \right) \times 100\%$$

※ 기타 산출방법은 위의 신용보증기관 회수실적 및 회수율을 준용한다

## 3

##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

## 1] 정성적 지표 내역

평가항목	평가요소 (기준)	배점	등급	평점
기술지식능력 부문		15		
추심업무 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사업수행시 시장인지도</li> <li>◆ 추심업무 및 미회수채권에 대한 이해도 (공공기관 채권추심 경험포함)</li> <li>◆ 재단 특수채권에 대한 이해도</li> </ul>	15		
인력조직 부문		10		
추심위임 수행조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추심업무 투입예정 인원수, 전국 점포망 규모</li> <li>◆ 참여 추심인력의 전문성 (경력, 자격증 등) 및 전담조직운영방안 (직접위임 및 재단근무위임 각각)</li> <li>◆ 인적구성 및 추심직원 운영방안의 적정성</li> </ul>	10		
사업수행계획 부문		20		
채권추심 회수율 제고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제안전략의 독창성 및 혁신성</li> <li>◆ 위임기간 중 월별 예상회수율의 적정성</li> <li>◆ 회수기법의 인지/활용도</li> </ul>	10		
채권관리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재단 특수채권의 악성화 차단방안</li> <li>◆ 채권회수기법과 업무상 적용방법</li> <li>◆ 재단 앞 보고체계의 적정성</li> </ul>	5		
추심업무 추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추심업무 진행단계의 적정성</li> <li>◆ 사업추진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, 현실성</li> </ul>	5		
지원기술·사후관리 부문		15		
민원예방 방지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민원예방 및 불법추심방지 대응전략</li> <li>◆ 금융감독원(감사원 포함)의 민원(불법추심 등)관련 제재내용</li> </ul>	10		
전산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채권추심 활용도</li> <li>◆ 제공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</li> </ul>	5		
합 계		60		

## 2] 정성적 지표의 평가점수 산출기준

-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참조하되,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함.

□ 정성적 평가점수(60점)는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함.

□ 항목별 등급평가 기준

평가등급	등급	평 가 기 준
탁월	S	제안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성이 있으며 탁월함
우수	A	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충실함
보통	B	제안의 내용이 보통으로 무난함
미흡	C	제안의 내용이 모호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
불량	D	제안의 내용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함

□ 항목별 배점에 따른 점수부여 방법

등급 항목배점	S	A	B	C	D
15점 배점 항목	15점	13점	11점	9점	7점
10점 배점 항목	10점	9점	8점	7점	6점
5점 배점 항목	5점	4점	3점	2점	1점

□ 평가위원은 상호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전문지식, 경험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.

□ 평가항목별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. 이 경우 최고점수,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.

□ 평가점수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할 시 해당 평가위원은 수정부분은 사유를 명기하고,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.

## 4

## 입찰가격(수수료율) 평가기준

## □ 입찰가격평가 (수수료율) : 20점

- 입찰가격평점은 직접위임(배점한도 10점)과 재단근무위임(배점한도 10점) 평점을 합산하여 산출

## ○ 평점산식

- 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(기준수수료율)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$$\text{평점} = \text{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} \times \left( \frac{\text{최저입찰가격}}{\text{해당입찰가격}} \right)$$

- 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$$\begin{aligned} \text{평점} = & \text{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} \times \left( \frac{\text{최저입찰가격}}{\text{추정가격의 80\%상당가격}} \right) \\ & + \left[ 2 \times \left( \frac{\text{추정가격의 80\%상당가격} - \text{해당입찰가격}}{\text{추정가격의 80\%상당가격} - \text{추정가격의 60\%상당가격}} \right) \right] \end{aligned}$$

※ 협상대상자 선정관련 세부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” 을 준용